

#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192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3. 6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-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 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 하고자함

## □ 주요골자

- 도지사권한사무중 일부를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
- 환경부고시(96-127호)등 관련규정 및 지침변경으로 사무의 위임근거 일치

## □ 근거법령 (따로붙임)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
-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
-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,제38조,제61조
-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,제38조

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및소방서장”을 “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· 소방서장 및 농촌진흥원장”으로 한다.

제2조제5항중 “별표5”를 “별표6”으로하여 이를 제6항하고,동조 제4항중 “별표4”를 “별표5”로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④도지사가 관장하는사무중 농촌진흥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4와 같다.

제5조중 “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및소방서장”을 “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· 소방서장 및 농촌진흥원장”으로 한다.

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(별표1) 권한위임사무중 환경지도과소관 제6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관련규정
환경지도과	6	○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 사항 (단,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은 제외) 가. 운행차 점검실시 나.운행차개선명령, 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 수리	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
	9	○ 과태료의부과,징수 (단,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은 제외)	소음진동규제법 제61조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